의 안 번 호	제114호
의결연월일	2019. 5. 14.

-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9. 5. 3. 예산군수

❍ 회 부 일 자: 2019. 5. 3. 산업건설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: 2019. 5. 14.
제24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수도과장: 정재현)

가. 제안이유

❍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명시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기준 분류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명시(안 제4조제1항 별표 2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최 광 욱)

○ **「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은 제4조제1항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분류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 등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**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○ **「원안가결」**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